

대외무역관리제도

수입관리제도

수입상품관리제도

화물수출입관리제도

- 수입금지화물, 수입제한화물, 수입자유화물, 관세쿼터관리화물로 분류

수입쿼터 및 수입허가증 관리제도

- 쿼터허가증 관리대상품목은 매년 상무부가 통일적으로 대외공표
- 국가정책 및 대외경제무역발전의 수요 및 국내외시장 변화에 따라 쿼터허가증 관리품목을 조정

수입상품관리제도

수입쿼터 관리품목 허가증 면제상품

- 가공무역의 수출제품의 직접 가공을 위한 자재
- 외상투자기업의 수출계약을 위한 수입자재

수출입허가증 발급기관

- 대외무역경제합작부
- 대외무역경제합작부 15개 항구사무소
- 30개 지방정부
- 5개 계획단열도시 대외경제무역청(위원회)

수입금지품목

- 무기류, 탄약 및 폭발물
- 위조화폐 및 유가증권
- 유해한 인쇄물, 필름, 사진, 음반, 영화 테이프, 비디오테이프, 레이저 디스크, CD 롬 등
- 아편, 모르핀, 헤로인, 대마초 등 중독성 및 신경 약물
- 유해한 동식물 및 동 제품
- 전염 발생지역의 물질 및 질병으로 전염 가능한 식품 및 약품 등

CCC 강제인증제도

개요

- 자국내 소비자 및 동식물의 안전, 환경보호를 위해 실시하는 일종의 상품검사제도
- 2002년 5월 1일 시행, 기존제도와 병행 시행
- 2003년 8월 1일부터 신규 CCC 인증제도가 독립 실시
- 모든 제품은 반드시 CCC인증 획득 요함

CCC 강제인증제도 - 제재사항

CCC 인증 취득한 생산, 판매, 수입업체가 지켜야 할 사항

- ① 인증취득 제품의 국가표준 및 기술규칙의 지속성 보장
- ② <리스트>내 제품의 판매 수입 시 우선 인증취득
- ③ 인증취득 제품은 반드시 CCC 인증마크를 부착
- ④ 인증증서 및 인증마크에 의한 판촉 금지
- ⑤ 인증증서 및 인증마크 혹은 부분적 서류 혹은 사본의 양도, 매매 금지
- ⑥ 각지 품질검사부문 및 지정 인증기관의 감독검사 혹은 추적검사를 접수

미이행시 제재사항

- ① <리스트>내 제품이 미 인증취득 했을 시, 3만원 이하의 벌금을 징수하는 동시에 유효기일 내에 인증을 취득하도록 함.

인증증서 취득 제품이 규정에 따라 인증마크를 사용하지 않았을 시, 기한 내에 수정하도록 강요하며, 기한이 지난 경우 1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

- ③ 인증증서 및 인증마크의 위조, 도용 및 기타 국가의 안전품질허가, 상품품질인증 관련법규를 위반한 행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함.
- ④ 지정 인정기관 및 그 검사기관에 거짓 증명 혹은 위조 서류를 제출한 경우, 법에 따라 대응되는 책임을 져야함